

중소기업 확인서 전산 연계 안내문

항상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서류로 받던 중소기업확인서를 오는 2026년 3월(예정*)부터 중소기업부 시스템과 연계한 전산 자동 확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.

*** 시스템 안정화 전까지는 서류 확인을 병행할 수 있음**

관련 업체 및 신고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(갱신)을 완료해 간편하게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변경 사항

구 분	기존 방식	변경 방식
확인 수단	서류 업로드 및 제출	전산 데이터 (업로드 X, 서류제출 X)

-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관세행정 업무
 - 간이정액환급 신청 외 다수 (세부사항은 첨부 참조)

□ 협조 요청 사항

- 대상: 중소기업확인서와 관련된 관세행정 이용자
- 내용: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 유효기간(1년)*이 있어 매년 갱신(주로 2~4월경) 필요

*** 중소기업 적용기간:**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
예) '25.12월 결산: 유효기간 '26.4.1.~'27.3.31.(유효기간은 고정, 발급은 언제나 가능)

-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관련 문의처
 - 일반상담 ☎국번없이 1357
 -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 현황 ☎1811-6508

■ 과태료 부과

- 수입 :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과태료 부과
- 화물 : ①출항적재화물목록 과태료부과,
②입항적재화물목록 과태료부과,
③보세운송관리 과태료부과관리
④반출입관리 과태료부과 , ⑤보세공장관리 과태료부과
- 수출 • 조사 • 여행자

■ 과징금 부과

- 수입 : ①원산지표시 과징금 부과(예정),
②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과징금부과(예정) 통지

■ 월별납부업체 신청

■ 통고처분

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

■ 간이정액환급업체 신청

■ 자동간이환급업체 신청

■ 서류_자동간이 업체 내역/변경

■ 환급지급심사

■ 기납증심사

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

■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

■ 납기연장관리

■ 분납고지관리

■ 부가세납부유예관리

■ FTA형 특별보세공장 신청

■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청

■ 부과고지대상물품 신고

■ 보세판매장 특허장소 이전 등